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6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교통실 도시철도과 이수용 (☎ 2133-440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조원”을 “27조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25조원</u>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자본금) ① ----- - <u>27조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u>서울시</u>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p> <p>8. · 9. (생략)</p>	<p>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시</u> ----- -----</p> <p>8. · 9. (현행과 같음)</p>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이수용 (02-2133-4402)